

□ 신고 대상

- 편·불법 운영 중인 (보통교와 및 외국어 교습) 학원·교습소·개인 과외교습자

신고대상 예시

- ①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은 강사가 교습하는 행위
 - ②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·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
 - ③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학원비 징수하는 행위
 - ④ 교습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
- (초·중) 05:00~22:00까지 교습 가능, (고등) 05:00~23:00까지 교습 가능

□ 신고 방법

- 시교육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pen.go.kr/main/cm/cntnts/cntntsView.do?mi=31768&cntntsId=549>)에서 신고 및 제보

**홈페이지
불법사교육신고 예시**

부안광역시교육청
참여·소통 · 민원·신고 · 소식·채용 · 교육뉴스 · 정보공개 · 교육청안내

불법사교육신고안내

HOME > 민원·신고 > 신고하기 > 불법사교육신고 > 불법사교육신고안내

신고하기

< 안내 내용 >

불법사교육신고센터

본 메뉴는 사교육 시책(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)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.

- 신고 대상(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에 한함)
 - 강사 채용·해임 미등록
 - 학원·교습소 등록·신고 의무 위반
 -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위반
 - 교습비 초과 징수
 -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 시간 위반
- 신고포상금

위반 유형	신고포상금	비고
학원·교습소 신고의무 위반	20만원	

홈페이지 불법사교육신고안내

불법사교육신고센터

본 메뉴는 사교육 시설(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)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.

- 신고 대상(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에 한함)
 - 강사 채용·해임 미등록
 - 학원·교습소 등록·신고 의무 위반
 -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위반
 - 교습비 초과 징수
 -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 시간 위반
- 신고포상금

위반 유형	신고포상금	비고
학원·교습소 신고의무 위반	20만원	○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학원 조례 제14조의4 요건 충족 시 지급(관련 법에 따라 지급대상 제외함) ○ 동일한 대상의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신고 시,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
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	월 교습비 50% (50만원 한도)	
수강료 초과징수, 교습시간 위반	10만원	

- 신고 시 유의 사항
 - 신고자의 주소, 성명,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
 -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, 익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신고하실 때 재부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
 -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첨부하여 주십시오

□ 위반 행위 확인

-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해당 학원·교습소·개인과외교습자의 정보 확인 후 신고·제보

위반행위 확인방법



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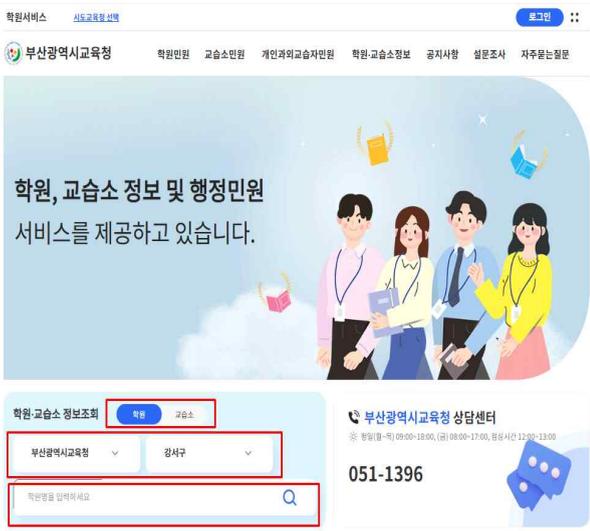
② '학원서비스' 선택



③ '바로가기' 선택



④ '부산광역시교육청' 선택



- ⑤-1 '학원 또는 교습소' 선택
- ⑤-2 '구·군' 선택
- ⑤-3 '학원 또는 교습소명' 입력



- ⑥-1 '학원 또는 교습소' 등록 여부 확인
- ⑥-2 '교습과목별 교습기간·교습시간' 확인
- ⑥-3 '교습비' 확인

※ ⑥-1~3 확인불가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최종 확인 후 신고